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31호 2023. 4. 20.(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3-7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 1
- 사천시 고시 제2023-7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사항 고시 ----- 2
- 사천시 고시 제2023-74호 한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계획 고시 ----- 3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3-588호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4
- 사천시 공고 제2023-605호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
- 사천시 공고 제2023-607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1
- 사천시 공고 제2023-608호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7
- 사천시 공고 제2023-609호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7
- 사천시 공고 제2023-611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78
- 사천시 공고 제2023-622호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6
- 사천시 공고 제2023-623호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94
- 사천시 공고 제2023-627호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6
- 사천시 공고 제2023-629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6
- 사천시 공고 제2023-630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25
- 사천시 공고 제2023-632호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4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고시 제2023-7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 4. 20.

사 천 시 장

승인번호 (연월일)	목 적	위 치	면적(㎡)	승인기간	피 승인자		비고
					주 소	성 명	
2023-7 (2023.4.7.)	구랑항 선착장 확장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1-9번지선	계: 2,399 -직접: 174 -간접: 2,225	2023.04.07.~ 2053.04.06.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2023-8 (2023.4.12.)	신소항 선착장 확장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449-5번지선	계: 1,121 -직접: 311 -간접: 810	2023.04.12.~ 2038.04.11.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2023-9 (2023.4.12.)	선전항 선착장 확장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897-8번지선	계: 2,410 -직접: 620 -간접: 1,790	2023.04.12.~ 2038.04.11.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고시 제2023-7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 4. 20.

사 천 시 장

신 고 자		점용·사용 승인사항				실시계획 신고 수리사항		
주 소	성 명	승인번호 (연월일)	승인기간	위 치	면적(㎡)	신고번호 (수리일자)	공사기간	공 사 내 역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2023-3 (2023.3.24.)	2023.03.24.~ 2053.03.23.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04-7번지선	852 (직접)	2023-5 (2023.4.5.)	2023.4.~ 2023.9.30.	구포항 선착장 확장 (B=3.0m, L=80m)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2023-5 (2023.4.3.)	2023.04.03.~ 2038.04.02.	사천시 곤양면 중항리 214-8번지선	계: 908 - 직접 108 - 간접 800	2023-6 (2023.4.5.)	2023.4.~ 2023.9.30.	안도항 선착장 계단설치 (L=40m)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2023-6 (2023.4.3.)	2023.04.03.~ 2038.04.02.	사천시 실안동 1187-2번지선	계: 389.5 - 직접 33.5 - 간접 356	2023-7 (2023.4.5.)	2023.4.~ 2023.9.30.	영복항 부잔교 (5.0m×5.0m) 및 도교(B=1m, L=10m) 설치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2023-7 (2023.4.7.)	2023.04.07.~ 2053.04.06.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1-9번지선	계: 2,399 - 직접 174 - 간접 2,225	2023-8 (2023.4.12.)	2023.4.~ 2023.9.30.	구랑항 선착장 확장 (B=4.0m, L=13.5m)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고시 제2023-74호

한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사천시에서 추진 중인 한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04. 20.

사 천 시 장

1. 사 업 명 : 한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조도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노후 등 기능 저하된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한 재해 사전 예방, 농작물 침수 피해 방지 및 농지 보전으로 영농여건 개선 및 지역 균형개발 도모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가. 사업의 내용
 - 전석 쌓기 L=130m, 그라우팅 75공, 콘크리트 포장 A=918㎡
 - 배수갑문 구조물 교체 1식, 자동문비·권양기 교체 1식
 - 부대공 1식
 - 나. 사업의 구역 :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조도리 일원
5. 사 업 비 : 1,147,000천원(국비 573,500, 도비 172,050, 시비 401,450)
6. 사업기간 : 2022. 7. ~ 2024. 12.(29개월)
7. 사업의 효과 : 노후 방조제 개보수에 따른 영농여건 개선 및 소득 증대에 따른 지역균형개발 도모
8.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해당 없음.
10. 관계도서의 비치 및 열람 장소 : 사천시청 건설과(전화 055-831-3275)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공고 제2023-588호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

[(우)52539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55)831-3310, 팩스번호: 055)831-6036]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침수 방지지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재난안전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침수 방지지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지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건축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 20. ~ 2023. 5. 10.(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사천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수방기준”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수방기준 제1조의2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제8조(지원 신청) ① 침수 방지지설 설치 사업비를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등
2. 침수 방지지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 동의서)
3. 침수 방지지설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 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관 련 법 규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2017. 10. 24., 2020. 1. 29.>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가. 자연재해 원인 조사 및 분석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풍수해 예방 및 대비

가. 삭제 <2017. 10. 24.>

나. 수방기준 제정·운영

다.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기준 제정·운영

라. 내풍(耐風)설계기준 제정·운영

마. 그 밖에 풍수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3. 설해(雪害)대책

가. 설해 예방대책

나. 각종 제설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그 밖에 설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4. 낙뢰대책

가. 낙뢰피해 예방대책

나.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다. 그 밖에 낙뢰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가뭄대책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

다. 빗물모으기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6. 폭염대책

가. 폭염피해 예방대책

나. 폭염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7. 한파대책

가. 한파피해 예방대책

나. 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다.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라. 그 밖에 한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8. 재해정보 및 긴급지원

가. 재해 예방 정보체계 구축

나. 재해정보 관리·전달 체계 구축

다. 재해 대비 긴급지원체계 구축

라. 비상대처계획 수립

9. 그 밖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 점검 방법, 점검 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⑤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연재해의 유형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대처 요령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업무지침, 주민 교육·홍보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7. 3. 21.>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공고 제2023-605호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명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작은도서관의 진흥과 운영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천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 나. 목적,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다. 시장의 책무, 운영자의 책무(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 라.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평생학습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평생학습센터소장)

(우편번호 : 52516 , 주소 :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 전화 : 831- 2594,
FAX : 831- 6063)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4.

제 출 자: 평생학습센터소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명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여 작은도서관의 진흥과 운영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천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

나. 목적,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다. 시장의 책무, 운영자의 책무(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라.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20. ~ 2023. 5.10.(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고,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자로 지방자치단체,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이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도서대출·반납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고, 운영시간 준수 및 인력 상주 등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운영시간, 자료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회칙으로 정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시의 교육·지도·감독·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문화활동 지원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제6조(위탁)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작은도서관별로 자치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문화, 교육, 도서관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주민 중에서 운영자가 위촉한다.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자료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1. 주 4일 미만 또는 1일 3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폐관예정 또는 휴관 중인 작은도서관
3.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시정 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진흥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단체·기업 등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관 련 법 규

□ 도서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구분)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 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공고 제2023-607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상위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다. 상생 임대료 인하 재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 코로나19 관련 주민세 감면 조항은 삭제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3. 주요내용

- 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인용(안 제5조1항3호)
- 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상위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안 제6조)
- 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년도를 2023년으로 개정(안 제8조의3)
- 라. 코로나 19 관련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조항 삭제(안 제8조의4)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864, FAX: 831-6027)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세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상위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다. 상생 임대료 인하 재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 코로나19 관련 주민세 감면 조항은 삭제

3. 주요내용

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인용(안 제5조1항3호)

나.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상위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안 제6조)

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년도를 2023년으로 개정(안 제8조의3)

라. 코로나 19 관련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조항 삭제(안 제8조의4)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78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1조의5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 20. ~ 2023. 5. 10.(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을 “장애인[「지방세 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제4항”으로, “한다)이”를 “한다]이”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을 “법 제78조의3제1항”으로,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을 “법 제78조의3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제8조의3제1항 중 “2022년”을 “2023년”으로, “2022년 7월”을 “2023년 7월”로 한다.

제8조의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2. (생략)

3.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1. 2. (현행과 같음)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제3항

법 제78조의3제12항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
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8조의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에게 건축물 임대료(2022년 1월부
터 12월까지 임대료를 말한다)를 3
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
우, 2022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
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
함한다)에 제2항의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② ~ ⑤ (생략)

제8조의4(코로나19 관련 개인사업자
에 대한 감면) 코로나19 위기 극복
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75조제
2항제1호의 개인에 대해서는 2022
년 8월에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사
업소분(기본세액)에 한정하여 100
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
세법」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골프장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고

“을 “3년“으로 한다.

제8조의3(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

-----2023년-----

-----2023년 7월-----

-----.

②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급오락장은 제외한다.

1. 삭제

2. 삭제

삭제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관 련 법 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2021. 6. 8.>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 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27., 2015. 12. 29., 2020. 1. 15.>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 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23. 3. 14.>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23. 3. 14.>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생략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및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⑬ ⑭ ⑮ 생략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 ② ③ 생략

④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12. 23., 2019. 12. 31.>

1.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 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생략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8. 12. 24., 2019. 12. 31.>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1.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삭제 <2014. 1. 1.>

3.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4. 생략

⑬ ⑭ ⑮ ⑯ ⑰ ⑱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0.>

1.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④ ⑤ ⑥ 생략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가공품(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장 자재·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7.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국가는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가공 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굴양식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가공·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⑥ 국가는 굴 양식 및 굴 가공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등에게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 (이하 “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의 생산·개발·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수산물 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3.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를 촉진 하기 위한 포장 자재·시설 및 자동화 장비의 매입
4.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③ ④ ⑤ ⑥ 생략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공고 제2023-608호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성실납세자 지급금 현실화 및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용 일부 수정함.

3.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 지급금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제1호)

1) 5만 원 이내 → 10만 원 이내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조항 신설(안 제 5조 제1항제2호)

1)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 납세자 증명서 발급 조문 신설(안 제5조의2)

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증 변경(안 별표 1)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864, FAX: 831-6027)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 치 법 규 명 :

○ 성 명(단 체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4. .

제출자: 세무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성실납세자 지급금 현실화 및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용 일부 수정함.

3.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 지급금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제1호)

1) 5만 원 이내 → 10만 원 이내

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조항 신설(안 제5조제1항제2호)

1)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 납세자 증명서 발급 조문 신설(안 제5조의2)

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증 변경(안 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4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 20. ~ 2023. 5. 10.(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5만 원이하 상품권”을 “10만 원 이하의 상품권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된 사천시 금고와 협의 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증명서의 발급)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별표 1] <개 정>



직경 6.5Cm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대한민국 성장의 날개! 우주항공청 경남 사천 설립, 이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사 천 시



수신
(경유)

제목 **사천시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 증명**

귀하(사)는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사천시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임을 증명합니다.

사천시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 증명				
	번 호	제 - 호	우대 및 지원기간	~
납 세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영업소)			

끝.

사 천 시 장 직 인

주무관

담 당

과 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52539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www.sacheon.go.kr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대국민공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p> <p>1. 제4조제1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u>5만 원이하 상품권</u> 지급</p> <p>2. 제4조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마. (생략)</p> <p><신설></p> <p>②·③ (생략)</p> <p><신설></p>	<p>제5조(지원 등) ① ----- ----- ----- --.</p> <p>1. ----- -- <u>10만 원 이하의 상품권 등</u> -- -----</p> <p>2. ----- -----</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u>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u>」에 따라 지정된 시의 <u>금고와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제5조의2(증명서의 발급)</u>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가 <u>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다.</u></p>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관 련 법 규

□ 공직선거법

[시행 2022. 8. 17.] [법률 제18837호, 2022. 2. 16., 일부개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4항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 25.>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공고 제2023-609호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255, FAX : 831- 6021)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 20. ~ 2023. 5. 10.(20일간)

나) 제출의견: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과 같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사천시의회 의장이”를 “사천시의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5조부터 제17조”를 “제14조부터 제20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사천시의회 의장이”를 “사천시의회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2. (생략)

3. 사천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생략)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사천시의회의에서 -----

4. (현행과 같음)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관 련 법 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 「지방자치법」

제129조(합의제 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공고 제2023-611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사천시 인구증가 시책에 따라 수강료 면제 기준에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을 추가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강료 면제 기준 추가(안 제7조제2항)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145, FAX: 831-6919)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사천시 인구증가 시책에 따라 수강료 면제 기준에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을 추가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수강료 면제 기준 추가(안 제7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 20. ~ 2023. 5. 10.(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다만, 2자녀 중 1명은 12세 미만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u> <u>(다만, 2자녀 중 1명은 12세 미만</u> <u>이어야 한다.)</u></p>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공고 제2023-622호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조문을 인용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1)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령 조문 인용(안 제3조~제4조)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69,
FAX : 831- 6025)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4.

제 출 자: 환경보호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령 조문을 인용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1)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상위법령 조문 인용(안 제3조~제4조)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 20. ~ 2023. 5. 10.(20일간)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사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 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7. 11. 28., 2019. 4. 2.>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 ⑬ < 생 략 >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공고 제2023-623호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탄소중립 관련 상위 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

나.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2. 주요내용

- 가. 탄소중립·녹색성장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3조)
-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3조)
- 라.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6조)
- 마.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769, FAX: 831- 6025)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 환경보호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가.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탄소중립 관련 상위 법령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

나.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하여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3. 주요내용

- 가. 탄소중립·녹색성장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3조)
-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3조)
- 라.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6조)
- 마.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폐지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나. 예산조치: 반영
-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기 간: 2023. 4. 20. ~ 2023. 5. 10.(20일 이상)
 - 나) 제출의견: 건
 -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사천시(이하“시”라 한다)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사천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사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기후위기 관련 기존 대책(사업)의 성과 및 효과
5.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6.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7.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5조(기본계획 등 추진상황의 점검) 시장은 기본계획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6조(사천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사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나.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탄소중립 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 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에 기여한 공로자와 기업,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해당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책자·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15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같은 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1.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공고 제2023-627호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임 및 숙박비 상위 규정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의2)

- 일 비: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지급
- 식 비: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지급
- 숙박비
 - 서울특별시: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지급
 - 광 역 시: 60,000원에서 80,000원으로 지급
 - 그 밖의 지역: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지급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 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 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0,

FAX : 831- 6021)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임 및 숙박비 상위 규정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의 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공무원 여비 규정」 제6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 20. ~ 2023. 5. 10.(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 ② (생 략)</p> <p>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u>시장이</u> 따로 정한다.</p>	<p>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p>
<p>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u>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u></p>	<p>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 ----- ----- 「<u>공무원 여비 규정</u>」 <u>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u></p>

신·구 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u><삭 제></u>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 차 (버 스)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 호	실비 (특실)	실비 (1등 급)	실비	실비	실비	
제2 호	실비 (일반 실)	실비 (2등 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p>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3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p> <p>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2. 자동차운임(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p>						

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관 련 법 규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2. 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9.>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⑥ 삭제 <2012. 1. 6.>

[전문개정 2010. 11. 10.]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공고 제2023-629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인구증가 시책 및 수강료 면제자 확대를 위해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의 수강료 면제 기준에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정을 추가하여 인구증가 및 복지혜택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강료 면제 기준 추가 및 신설((안)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13조2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서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추가
5.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다만, 2자녀 중 1명은 12세 미만이어야 한다.)<신설>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360, FAX: 831-6520)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여성가족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사천시 인구증가 시책 및 수강료 면제자 확대를 위해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의 수강료 면제 기준에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정을 추가하여 인구증가 및 복지혜택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수강료 면제 기준 추가 및 신설(안 제13조)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 20. ~ 2023. 5. 10.(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관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면제
2. 시의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 100분의 50 감면

제13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수강료”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5.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다만, 2자녀 중 1명은 12세 미만이어야 한다.)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신 설></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관의 <u>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u></p> <p>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u></p> <p>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p> <p>3. ~ 5.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6. (생략)</p> <p>② <u>시의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u></p>	<p>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복지관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u></p> <p>1.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면제</u></p> <p>2. <u>시의 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 100분의 50 감면</u></p> <p>② ----- ----- 수 강료----- --.</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삭 제></p> <p>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5. <u>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 (다만, 2자녀 중 1명은 12세 미만이어야 한다.)</u></p> <p>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삭 제></p>

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
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공고 제2023-630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로 인한 이·통장 적임자 부족과 연임제한 규정으로 인한 주민의 의사와는 다른 이·통장 임명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개모집에서 연임 제한 받는 이·통장에게도 공정한 경쟁 기회 부여

2. 주요내용

가. 이·통장 연임제한 규정 삭제(안 제4조 제4항)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나. 이·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일부 삭제(안 별표4)

- 공정한 경쟁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기존 이·통장에게 유리한 “이장·통장 활동 경력”을 후보자 심사기준표 심사항목에서 삭제하고, 이장·통장 거주기간의 배점을 증가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6, FAX : 831- 6021)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인구감소로 인한 이·통장 적임자 부족과 연임제한 규정으로 인한 주민의 의사와는 다른 이·통장 임명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개모집에서 연임 제한 받는 이·통장에게도 공정한 경쟁 기회 부여

3. 주요내용

가. 이·통장 연임제한 규정 삭제(안 제4조 제4항)

나. 이·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심사항목 일부 삭제(안 별표4)

- 공정한 경쟁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기존 이·통장에게 유리한 “이장·통장 활동 경력”을 후보자 심사기준표 심사항목에서 삭제하고, 이장·통장 거주기간의 배점을 증가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 20. ~ 2023. 5. 10.(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하되, 두 차례만”을 “하되,”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이·통·반장은 이 규칙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이·통장의 임명과 정수 등) ① ~ ③ (생 략) ④ 이·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u>하</u> <u>되, 두 차례만</u> 연임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제4조(이·통장의 임명과 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하</u> <u>되, -----</u> . ⑤·⑥ (현행과 같음)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별표 4]

이장·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제4조제3항제2호 관련)

심사대상자(읍·면·동 리·통)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택)
주소							(휴대폰)

심사기준 (기준일: 공고일 현재)

심사항목 (비율)	배점기준	배점	특점	비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리·통 관할구역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0)	10년 이상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합산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0년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신설 리·통의 경우 해당 읍·면·동 거주기간으로 함
	7년 이상 ~ 10년 미만	18		
	4년 이상 ~ 7년 미만	16		
	1년 이상 ~ 4년 미만	14		
	1년 미만	12		
2. 최근 5년간 봉사활동 경력 (15)	250시간 이상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만 인정
	200시간 이상 ~ 250시간 미만	13		
	150시간 이상 ~ 200시간 미만	11		
	150시간 미만	9		
	봉사활동 경력 없음	5		
3. 이장·통장 활동 집중도 (10)	없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장·통장 임무수행(회의 참석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등의 부정기적인 시간제근무는 직장으로 보지 않음
	있음(자영업)	7		
	있음(직장인)	5		
4. 최근 5년간 상훈 (5)	장관급 이상, 사천시장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국회 및 지방의회를 말함
	광역·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3		
	그 밖에 행정기관	1		
	없음	0		
6. 면접(50)		50		
총 계		100		
확인자(읍·면·동장)		직급	성명	(인)

※ 상기 심사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공고 제2023-632호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이 2023. 3. 28.개정(2023. 3. 28.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 나.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3조 별표)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지역보건법」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치매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치매관리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741, FAX: 831-6043)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4. .

제 출 자: 치매관리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이 2023. 3. 28.개정(2023. 3. 28.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3조 별표)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역보건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4. . ~ 2023. 5.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과태료 부과 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 <u>제34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u> 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대상) ----- ----- <u>제34</u> <u>조제1항 및 제2항</u> ----- -----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1,000	2,000	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한 경우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사 천 시 공 보

제831호

관 련 법 규

□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3. 28.>